### 평택시 고시 제2016-180호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에 의거 낚시 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2016년 07월 05일

## 평 택 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승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와 선원 및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영업시간)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이하 "낚시어선" 이라한다)의 영업시간은 기상관측소 기준으로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항해 장비를 설치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야간항해 가능으로 어선검사증서상 야간운항이 가능한 낚시어선은 출·입항 기준으로 하절기(4.1~10.31) 04:00~20:00까지, 동절기(11.1~3.31) 05:00~19:00까지로 하며, 다른 법령에 항해금지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항횟수)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횟수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단, 1회차 낚시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여 낚시승객이 낚시장소에 있을 경우, 2회차 승객과 1회차 승객의 합은 승선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영업구역)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인천광역시 · 경기도 관할 수역 및 경기도 · 충청남도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으로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선장, 선원)는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구역과 간출암에는 낚시어선의 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안전운항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기준과 안전운항의무를 준수할 것.
- 2. 정원초과승선 금지 및 낚시어선 승선정원 및 승객준수사항을 게시 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시킬 것.
- 3.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연락체계(선주·선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를 유지하고, 기상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것.
- 4. 승객이 안전대피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대피조치를 요청할 것.
- 5. 다른 시·군 관할수역에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수역·육역)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명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
- 6.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바다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지 않아야 하며, 승객들이 생산한 쓰레기 등을 수거하기 위한 쓰레기봉투와 휴지통을 선내에 비치할 것.
- 7. 강풍, 풍랑, 해일,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경우와 안개 등으로 해상에서의 시계(視界)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밖에 출입항신고 기관의 장이 해상 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항을 하지 말 것.

- 8. 낚시어선업자(선장,선원)는 낚시승객이 낚시어선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음주를 할 경우 낚시승객에게 음주행위를 자제 하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
- 9. 낚시어선업자(선장,선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요구 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 10. 항해 중에는 VHF 등 무선설비 및 V-Pass 등 위치발신장치를 항상정상 작동시켜야 한다.
- ②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2.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장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3. 낚시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
  - 4.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한 포획·채취금지 기간·체장·체중 미만의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 5. 낚시장소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중에 기상이 악화될 경우 낚시어선 선장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6.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이 아닌 수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7. 낚시어선업자(선장,선원)가 승객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승객에게 음주 자제를 요청 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8.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고발생의 보고)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때 및 충돌·좌초 기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리시 및 인접시장·군수

· 구청장과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 후 인명 등 사고수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등)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상기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승객에게 준수하도록 조치 할 수 있고, 이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개별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낚시어선업자는 미조치시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06일까지로 한다.

### 부칙(2016.07.0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 전 종전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제2013-05호, 2013. 01. 07. 시행)는 폐지한다.

#### [별표 1]

#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1. 게시판의 제작기준

가. 재질: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

나. 색상

1) 글씨: 검은색

2) 바탕: 승선정원 - 흰색

승객 준수사항 - 노란색

- 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래 (게시방법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 2. 게시판의 부착장소 해당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 【게시방법의 예시】

승선정원: 00명

승객 준수사항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 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 1.
- 2.
- 3 .
- •